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의 공개를 확대하고 기본·초과배출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기준을 3시간 자료에서 24시간 자료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의 공개 확대(안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전산처리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던 것을, 일 배출량 등을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하여 빅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함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5항, 제44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대한 기본·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는 자동측정된 “3시간 자료(3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던 것을 “24시간 자료(24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 추가
(안 제 84조의2)

개인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므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관리”를 “관리·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간”을 “일”로, “매년 6월 30일”을 “매분기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3시간 자료(이하 “3시간”을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중 “3시간 평균치”를 “24시간 평균치”로, “3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4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시간 평균치가”를 “24시간 평균치가”로,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을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으로, “3시간 평균치에서”를 “24시간 평균치에서”로,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으로 한다.

제84조의2 중 “관한”을 “관한 사무 및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관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41조제5항,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는 제41조제5항,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u>관리</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u>관리·공개</u> -----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u>연간</u>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u>매년 6월 30일</u> 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 ----- ----- <u>일</u> ----- ----- <u>매분기의 다음 달 말일</u> ----- ----- -----.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 ④ (생략)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 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⑤ ----- ----- ----- ----- ----- ----- -----.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이하 “3시간 평균치”라 한다)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

1. -----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

2. -----

가. -----

----- 24시
간 -----
-. -----

----- 24시간 -----

-----.

나. -----

간 24시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24시간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8 –

을 초과한 그 <u>3시간의 배출허용 기준</u>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u>3시간 평균치에서</u>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u>3시간의 평균배출유량</u>을 곱하여 산정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에 <u>관한</u>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u>24시간의 배출허용 기준</u> ----- ---- <u>24시간 평균치에서</u> ---- ----- <u>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u>관한 사무 및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관한</u> ---- ----- ----- -----.
---	---